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82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박상웅 · 조은희 · 배준영
윤한홍 · 고동진 · 김도읍
박정하 · 권성동 · 김미애
송석준 · 박덕흠 · 김위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석유·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술과”를 “기술(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생산공정 개선,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상용화”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환경오염의”를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 환경오염의”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정생산기술(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 및 관련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u>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u></p> <p>1의2. ~ 13. (생략)</p> <p>제3조(종합시책) ① (생략)</p> <p>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u>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u></p> <p>4. ~ 7.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① (생략)</p> <p>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p>	<p>제2조(정의) ----- -----.</p> <p>1. ----- ----- ----- -----<u>기술(친환경 대체 연료·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과</u>----- -----.</p> <p>1의2. ~ 13. (현행과 같음)</p> <p>제3조(종합시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생산공정 개선,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상용화</u>-----</p> <p>4. ~ 7.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③ · ④ (생략)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

2. ~ 8. (생략)

② · ③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 환경오염의-----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

-----.

1. 청정생산기술(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 및 관련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